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1차 임시증권선물위원회('25.7.11.) 조치 의결

증권선물위원회는 7월 11일 제1차 임시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공시한 (주)아스트와 (주)숲에 대하여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주)아스트의 감사인으로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삼덕회계법인, 신화회계법인, 대주회계법인 및 소속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결정하였습니다.

< 증선위 조치내용 요약 >

구분	조치내용	
(주)아스트	☐ 회사 및 회사관계자 - 과징금(前대표이사 10.2억원, 前재무담당임원 3.6억원, 前감사 1.2억원, 前공시담당임원 7.2억원, 前전략기획임원 0.2억원) - 회사 증권발행제한 12월 - 감사인지정 3년 - 퇴직자 해임(면직) 권고 상당 (前경영진 5인) - 검찰고발(회사 및 前경영진 4인)	
삼덕회계법인 ('17)	☐ 삼덕회계법인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70%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3년	☐ 공인회계사 1인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4년 -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1년 등
신화회계법인 ('18~'19)	☐ 신화회계법인 - 과징금 2억원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70%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3년	☐ 공인회계사 1인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4년 - 주권상장·지정·대형비상장회사 감사업무 제한 1년 등 ☐ 공인회계사 1인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3년 - 주권상장·지정·대형비상장회사 감사업무 제한 1년 등
대주회계법인 ('20~'22)	☐ 대주회계법인 - 과징금 4억원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70%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3년	☐ 공인회계사 1인 - 직무정지건의 1년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4년 등 ☐ 공인회계사 1인 - 직무일부정지건의 6월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3년 등
(주)숲	☐ 회사 및 회사관계자 - 과징금(회사 14.8억원, 前대표이사 0.3억원, 前재무담당임원 0.3억원) - 감사인지정 3년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주)아스트에 대한 제재조치 주요내용]

< 주요 지적사항(재고자산 허위공시) >

(주)아스트(이하 ‘회사’)의 前경영진은 재고자산 과대계상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재무제표를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前경영진은 종속회사 외부감사인에게 재고자산 과대계상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의 재고자산 수불부 제출을 지시하는 등 조직적으로 감사인의 정상적 외부감사를 방해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회사의 前경영진은 허위공시 재무제표를 바로잡을 기회가 수차례 있었음에도 사적 이익을 위해 위반을 장기간 방치하여 투자자 피해를 확대시켰 습니다.

< 주요 조치내용 >

재무제표를 고의로 허위공시한 회사 및 회사의 前경영진에게 증권발행제한, 과징금(금융위 최종 의결), 검찰고발, 감사인지정 등의 중징계 조치를 부과 하였습니다.

특히, 재무제표 허위공시 위반을 알고도 장기간 이를 숨겨 투자자 피해를 키운 前대표이사에게는 외감법상 과징금 도입('17.10월, 외감법) 이후 개인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고 금액인 10.2억원을 부과하였습니다.

※ 분식회계에 대한 개인과징금은 '회사로부터 수령한 일체의 금전적 보상(급여 등)'을 기준금액으로 하여 위법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기준금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 가능

향후에도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투자자 피해를 유발하는 고의 분식회계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조치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 추가 의결사항(상장관리 불필요 조치) >

한편, 증선위는 (주)아스트에 대해서 “상장관리조치 불필요”를 의결하였습니다.

“상장관리조치 불필요”는 증선위의 검찰고발·통보가 있더라도 회사에 대한 거래정지 및 상장실질심사 등 상장관리조치를 면제하는 조치입니다.

이는 회계부정 발생 이후, 대주주 및 경영진이 완전히 교체되고, 회사가 정상화되는 과정에 있는 경우, 기계적으로 거래정지 및 상장실질심사를 시행하게 되면 기업 부실화 및 선의의 소액투자자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24.6월, 거래소 상장규정 개정)한 제도입니다.

(주)아스트의 ❶대주주('23.3월)와 대표이사 등 주요 경영진('24.2월)이 모두 교체되었고, ❷새로운 대주주 및 경영진은 재무제표 허위공시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재고실사, 외부전문가를 통한 회계부정조사를 적극 실시('23.12월)하여 재무제표 오류를 신속히 수정하여 공시('24.2월)하였으며, ❸'19~'24년 중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으나, 대주주의 대규모 자금투입 등을 통해 '25.1분기에 분기 순이익을 실현하는 등 회사가 경영정상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상장조치 불필요”를 의결하였습니다. 동 건은 상장관리 불필요 조치 도입 이후,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최초 사례입니다.

※ 【참고】 (주)아스트의 대주주 및 경영진 변경 이력

- '23.3.10. 최대주주 변경(前대표이사→유암코)
- '23.3.31. 주요 경영진 교체
- '24.2.29. 대표이사 변경

※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담당 부서 <총괄>	금융위원회 회계제도팀	책임자	팀 장	태현수 (02-2100-2690)
		담당자	사무관	고광순 (02-2100-2692)
		담당자	주무관	윤우진 (02-2100-2698)
<공동>	금융감독원 회계감리1국 금융감독원 회계감리2국	책임자	국 장	유형주 (02-3145-7700)
		담당자	팀 장	유홍근 (02-3145-7731)
		책임자	국 장	장영심 (02-3145-7290)
		담당자	팀 장	박성영 (02-3145-7306)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제1차 임시증권선물위원회, 2025. 7. 11. 의결)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

회사명 등	지 적 사 항	조 치
(주)아스트 결산기 : 2016.12.31. 2017.12.31. 2018.12.31. 2019.12.31. 2020.12.31. 2021.12.31. 2022.12.31. 코스닥 상장법인 업종 : 항공기부품 등 제조, 판매	◇ 회사 회계처리기준 위반 지적사항(전체) ① 재고자산 과대계상 (연결: '17년 20,400백만원, '18년 65,966백만원, '19년 84,466백만원, '20년 97,853백만원, '21년 98,420백만원, '22년 107,510백만원) (별도: '17년 22,012백만원, '18년 61,572백만원, '19년 72,370백만원, '20년 86,670백만원, '21년 82,220백만원, '22년 93,540백만원) - 회사는 이미 판매된 재고자산 등을 매출원가로 비용처리해야 함에도 여전히 재고자산으로 보유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여 자기자본 및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함 ② 파생상품부채 미계상 (연결: '16년 30,576백만원, '17년 35,973백만원, '18년 38,652백만원, '19년 50,293백만원, '20년 57,184백만원, '21년 56,356백만원, '22년 22,784백만원) (별도: '16년 56,042백만원, '17년 62,855백만원, '18년 68,711백만원, '19년 60,826백만원, '20년 60,846백만원, '21년 19,608백만원, '22년 32,252백만원) - 회사는 종속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 전환상환 우선주 등의 투자자들에게 조기상환 청구권을 부여하였음에도 이를 파생상품부채로 계상하지 않음 ※ 동 위반과 관련하여, 감사인의 외부조회 요청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감사실패를 초래한 일부 조회처에 대해 증선위 명의로 향후 적극 협조를 당부하는 공문 발송 예정 ③ 현금창출단위 및 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과소계상 (연결: '22년 6,034백만원) (별도: '21년 36,631백만원, '22년 71,799백만원) - 회사는 재고자산 과대계상(지적사항①) 오류 등이 발생한 재무제표를 기초로 사업계획을 작성하였고, 이로 인해 현금창출단위 및 종속기업투자주식의 회수가능액을 잘못 추정하여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함	회 사 : - 증권발행제한 12월 - 과징금 : 총 22.4억원 前대표이사 : 10.2억원 前담당임원 : 3.6억원 前감사 : 1.2억원 前공시담당임원 : 7.2억원 前전략기획임원 : 0.2억원 ※ 회사관계자 5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 감사인지정 3년 - 前대표이사 외 4인 해임(면직)권고 상당 - 검찰고발 (회사, 前대표이사 외 3인)

회사명 등	지 적 사 항	조 치
	④ 매출채권 및 차입금 과소계상 (연결·별도 : '19년 20,399백만원, '20년 848백만원, '21년 12,555백만원, '22년 18,594백만원) - 회사는 매출채권 매각거래가 기업회계기준상 양도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함에도 동 거래를 매각거래로 잘못 회계처리하였음 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대한 취약점 - 회사는 제22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재고자산 관련 내부 검증 절차를 적절히 설계 및 운영하지 않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대한 취약점이 발생하였음 ⑥ 외부감사 방해 - 회사는 종속회사 외부감사 대응 시 재고자산 과대계상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은폐하기 위해 재고자산수불부를 조작하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하였음 - 회사는 주주간 협약의 존재를 은폐하기 위해, 감사인이 발송한 조회서에 대해 거짓 회신하도록 조회처와 공모하거나 일부 조회서를 위조하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하였음 ⑦ 증권신고서 거짓 기재 - 회사는 '20.12.18. 및 '21.12.15.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작성한 '19년 및 '20년 재무제표를 사용함	

(감리집행기관 : 금융감독원 회계감리1국)

[감사인의 감사절차 위반 관련]

회사명 등	지 적 사 항	조 치
(주)아스트의 감사인 삼덕회계법인('17)	① 재고자산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연결: '17년 20,400백만원, 별도: '17년 22,012백만원) - 감사인은 재고자산과 관련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삼덕회계법인 :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70% - (주)아스트 감사업무 제한 3년 공인회계사 1인 : - (주)아스트 감사업무 제한 4년 - 주권상장회사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1년 - 직무연수 16시간

(감리집행기관 : 금융감독원 회계감리1국)

[감사인의 감사절차 위반 관련]

회사명 등	지 적 사 항	조 치
(주)아스트의 감사인 신화회계법인('18~'19)	① 재고자산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연결: '18년 65,966백만원, '19년 84,466백만원) (별도: '18년 61,572백만원, '19년 72,370백만원) - 감사인은 재고자산과 관련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② 매출채권 매각거래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연결·별도: '19년 20,399백만원) - 감사인은 매출채권 매각과 관련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신화회계법인 : - 과징금 2억원 ※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70% - (주)아스트 감사업무 제한 3년 공인회계사 1인 : - (주)아스트 감사업무 제한 4년 - 주권상장회사·지정회사 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1년 - 직무연수 16시간 공인회계사 1인 : - (주)아스트 감사업무 제한 3년 - 주권상장회사·지정회사 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1년 - 직무연수 12시간

(감리집행기관 : 금융감독원 회계감리1국)

[감사인의 감사절차 위반 관련]

회사명 등	지 적 사 항	조 치
(주)아스트의 감사인 대주회계법인('20~'22)	① 재고자산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연결: '20년 97,853백만원, '21년 98,420백만원, '22년 107,510백만원) (별도: '20년 86,670백만원, '21년 82,220백만원, '22년 93,540백만원) - 감사인은 재고자산과 관련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② 파생상품부채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연결: '21년 56,356백만원, '22년 22,784백만원) (별도: '21년 19,608백만원, '22년 32,252백만원) - 감사인은 파생상품부채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③ 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과소계상 (별도: '21년 36,631백만원, '22년 69,536백만원) - 회사는 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④ 매출채권 매각거래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연결·별도: '20년 848백만원, '21년 12,555백만원, '22년 18,594백만원) - 감사인은 매출채권 매각과 관련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대주회계법인 : - 과징금 4억원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70% - (주)아스트 감사업무 제한 3년 공인회계사 1인 : - 직무정지건의 1년 - (주)아스트 감사업무 제한 4년 - 주권상장회사·지정회사 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1년 - 직무연수 16시간 공인회계사 1인 : - 직무일부정지건의 6월 - (주)아스트 감사업무 제한 3년 - 주권상장회사·지정회사 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1년 - 직무연수 12시간

(감리집행기관 : 금융감독원 회계감리1국)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

회사명 등	지 적 사 항	조 치
(주)쑤 (舊 (주)아프리카티비) 결산기 : 2021.12.31., 2022.12.31.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업종 :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 회사 회계처리기준 위반 지적사항(전체) ① 영업수익 및 영업비용 과대계상 (’21년 11,815백만원, ’22년 25,890백만원) - 회사는 게임 콘텐츠 광고 개인방송 용역을 주선하는 대리인으로서, 관련 수익을 순액*으로 인식하여야 함에도 총액*으로 인식함에 따라 영업수익 및 영업비용을 과대계상하였음 * 순액 : 수익과 관련비용을 상계한 후 수익 인식 총액 : 수익과 관련비용을 각각 수익·비용 인식	회 사 : - 과징금 : 총 15.4억원 회사 : 14.8억원 前대표이사 : 0.3억원 前담당임원 : 0.3억원 ※ 회사 및 회사관계자 2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 감사인지정 3년

(감리집행기관 : 금융감독원 회계감리2국)